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2교대 내지 3교대 순환 근무를 하여 와 근무 시간이 자주 변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스크림 생산 기계를 운전·수리·세척하고 아이스크림을 시식하는 업무를 해 오면서 코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여 왔을 것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위계양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위계양이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시식하여 왔던 아이스크림이나 기계 세척에 사용되던 약품이 발암물질이라는 확실한 보고도 없는 이상, 원고의 코로나 스트레스 또는 위계양 등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거나 위암을 통상의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이유

1. 처분의 경위

-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1996. 12. 13. 판결 95구5693
- 판시사항 :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1, 2는 을 제1호증과 같다)와 증인 이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79. 3. 1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관리부 창고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3. 8. 16.부터 생산부 생산과로 전보되어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의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그러다가 1992. 5. 8. 서울 동대문구 회경동에 있는 ○○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진단 받고 이어 1992. 8. 5. 같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4일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항암 치료 및 추적 검진을 받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1994. 7. 14. 위와 같은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달 18일 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부터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8. 16.부터 생산부에 배치되면서 1일 2교대 내지 1일 3교대 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교대로 해 오므로써 신체의 리듬을 유지하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을 시식하여 맛을 확인하는 이른바 카니발 작업을 해 오면서 여기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색소, 잔류 세척제 성분 등 발암물질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세척작업에 소요되는 가성소다 등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0. 10. 이후부터는 소외회사의 자동화 작업이 진행되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원고는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달성과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이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위암이 통상의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원고의 요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또는 그밖의 업무상의 다른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업무 수행상의 코로나 스트레스 또는 그밖의 업무상의 다른 요인 등의 근로자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위암이 그 코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 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위 백병원장에 대한 1996. 5. 4.자 사실조회의 일부 결과는 아래의 인정 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생산부에 배치되면서 성수기인 여름에는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교대하는 2조 2교대 근무를, 비수기인 나머지 기간에는 06:00, 14:00, 22:00에 각 교대하는 3조 3교대 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되풀이하는 근무를 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근무 시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소외회사는 점심 및 야근하는 경우에 야식을 제공하는 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 생산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나) 원고는 생산부에서 아이스크림 생산 기계를 운전하는 보조 업무를 하면서 최종 생산물을 시식하는 이른바 카니발 업무를 하였으며, 또한 가성 소다 등을 이용한 세척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에 부수하여 부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기계가 고장나거나 세균이 검출된 경우 다른 근로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기계를 수리하거나 세척해야 했다. 한편 1990. 10.경 소외회사에 자동화 사업이 진행되어, 원고는 자동화 기계 조작 방법을 익히고 이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고, 그 도입 초기에는 자동화 기계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수리해야 하기도 했다.

(다) 현대 의학상 위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위암은 발암 물질이나 발암 전달 물질들과 발암 보조 물질들이 음식물에 섞여 들어와 위암을 유발시킨다는 가설이 있을 뿐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시식하여 왔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의 세척에 사용되는 가성 소다 등의 약품이 발암 물질이나 발암 전 물질, 혹은 발암 보조 물질이라는 확실한 보고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2. 5.경 위궤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소주 2병 정도를 일주일에 2, 3회 마셔 왔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1주일 단위로 2교대 내지 3교대 순환 근무

를 해 와 근무 시간이 자주 변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2교대 근무시에는 근로 시간 등이 비교적 길어 과로가 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여 왔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위궤양 등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거나 위암을 통상의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㉔**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2001 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저희 대학원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선도해 갈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야간)
2. 모집인원 : 〇〇명
3. 모집전공

산업의학전공	의사면허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산업위생학전공	이공계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산업보건간호학전공	간호사면허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보건영양학전공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심사
5.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 11. 24(금)~2000. 12. 2(토) 09:00~17:00
 ※ 공휴일은 휴무, 토요일은 12시까지
 ※ 입학원서는 Homepage에서 Download 가능(<http://lib.cuk.ac.kr/gsoh>)
6. 전형일시 : 2000. 12. 7(목) 오후 2시
7. 합격자 발표 : 2000. 12. 20(수) 오후 2시
8. 원서교부·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교학과
 전화 (02) 590-1133~4